

2025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

『2025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』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11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< 주요사항 >

<주요일정>

신청·접수기간	선정평가	협약
'25년 8월 1일(금) ~ '25년 8월 14일(목)	'25년 10월	'25년 11월

<지원대상>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후 AI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

<지원조건>

지원유형	지원기간	지원한도	지원비율	구축목표수준*
자율형공장 (AI트랙)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50% 이내	중간1 이상 목표설정 (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(동일수준가능))

※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 참고

<선정절차> 사업신청서 접수과제에 대해 요건검토-사업계획수립(AI도입계획포함)-기술성평가(대면)-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실시

<참고사항>

< 제조기업 AX전환 컨설팅 >

- 본 사업은 사업신청서 제출 후 도입-공급기업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작성기간(1개월)을 부여하며, 제조기업의 AI 도입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진행 예정
-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대상으로 AI도입계획수립 지원 컨설팅 일정 및 장소 별도안내

1. 사업개요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도모
-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구축 후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
*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타사업과 동시수행 가능(단, 자율형공장 제외)
- (지원내용)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,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, 예측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
 -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·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·분석하고,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
 - 고도화 수준(중간1)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(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)
* (기존)기초→(AI)중간1, (기존)중간1→(AI)중간1 또는 중간 2, (기존)중간2→(AI)중간2

□ 지원 예산 및 조건

- (지원 예산) 100개 과제 내외 *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- (지원 조건) 총 사업비의 50%(2억원) 이내

지원유형	지원기간	지원한도	지원비율	구축목표수준*
자율형공장 (AI트랙)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50% 이내	중간1 이상 목표설정 (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(동일수준가능))

※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 참고

2. 신청기간·방법 및 자격 등

□ 신청 기간·방법

- (신청 기간) '25. 8. 1.(금) ~ 8. 14.(목) 17시까지

☞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
가급적 마감 2~3일 전에 온라인 최종제출 요망
☞ 공고 미숙지,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, 접수 불가

○ (신청 방법)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 신청

☞ 신청 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기업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

*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회원가입 필수

○ (제출 서류)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

구분	제출서류 목록
필수 제출서류	- 사업신청서 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-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(서명 필요)* - 최근 3개년도('22~'24) 재무제표 각 1부(국세청 발급)
해당 시 제출서류	-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제출 - 가점 증빙 서류(붙임 참조,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)

*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의 '사업안내-사업공고' 붙임파일 참고

□ 신청 자격

- (도입기업) 국내 제조기업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 - 스마트공장 구축이력(수준확인 포함)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사업장이 동 사업 신청가능
 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- 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
-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'공급기업 Pool'에 등록된 기업

* (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- 알림 /참여마당 - 공지사항'에서 "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(1077번 게시글)" 참조

○ (지원 제외 사항)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- ▷ 휴·폐업중인 기업
-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▷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·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3. 평가 및 추진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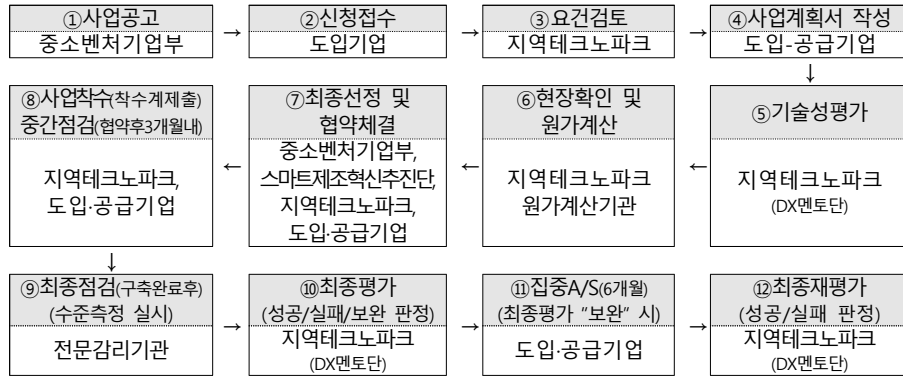
☞ 평가, 선정,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절차 (붙임 참고)

- (요건 검토)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,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
- (사업계획서 작성) 도입-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AI-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
 - * 제조AI도입을 위한 컨설팅 진행예정 (요건검토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)
- (기술성 평가)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AI-스마트공장 구축목표·방식,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
- (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)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,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
 -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, 일부 예외 인정*(단, 공장설립(계획)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)
 - * (예외 인정항목)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

○ (최종 선정)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

□ 추진 절차



* ⑩최종평가결과 "보완"인 경우 '⑪집중A/S' 및 '⑫재평가' 진행

4. 유의사항

☞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

□ 신청·접수 관련

○ (동시수행)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제조AI 도입을 위해 동 사업 신청가능 (단, 구축내용 중복불가)

* 단, 자율형공장 사업 수행 중인 기업은 본사업 지원대상 제외

○ (사업신청서) 도입기업은 AI-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, 구축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한 내 온라인 접수

○ (사업계획수립)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(제출기한 : 8.25(월) ~ 9.26(금))

- 다만,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(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)

○ (구축 목표 설정)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 이상을 목표로 설정

※ (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) '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→ 사업안내 → 도입기업 지원현황' 에서 조회 (20년 이후 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)

○ (보안대책 수립)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,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·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

□ 사업비 편성 관련

○ (필수 비용) ①회계 정산 수수료, ②교육비, ③기술임치비를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

① 회계 정산 수수료 :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

<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>

총사업비 규모	표준수수료(공급가액 기준, 천원)	비고
50백만원 이하	455	부가세 제외
200백만원 이하	637	
400백만원 이하	910	
400백만원 초과	1,182	

* 정산대상 사업비(총사업비) :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

② 교육비 : 스마트공장 기술교육(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) 수강 비용 (1백만원) 필수 편성

③ 기술임치비 :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(45만원) 필수 편성

< 기술임치제도 >

- (임치제도)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,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
- (임치효과)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,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
- (의무사항)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,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,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

※ (임치기관)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,escrow@win-win.or.kr)

○ (현물편성) 기업부담금 중 20%이내(최대 4천만원)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,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 가능

*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기업부담금 내에서 현금으로도 편성 가능

-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

편성 가능하며,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

-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

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

□ 교육 이수

○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“스마트공장 교육”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

- (교육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

<스마트공장 교육 현황>

구분	세부 내용
사업관리교육 (온라인)	- 대상 : 도입·공급기업(①대표자 및 임원, ②실무자)[각 대상기업별 2명, 총 4명] 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방지교육, 우수사례, 사업비 사용법 등 *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,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- 비용 : 온라인교육 무료수강(https://ssup.kosmes.or.kr)
기술교육 (오프라인)	- 대상 : 도입기업(①대표자 및 임원, ②실무자)[총 2명] - 내용 :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-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(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)

*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·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

□ 기타 사항

○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

※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

○ 자격·유형·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, 오기재·누락·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·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

○ 온라인 신청·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

5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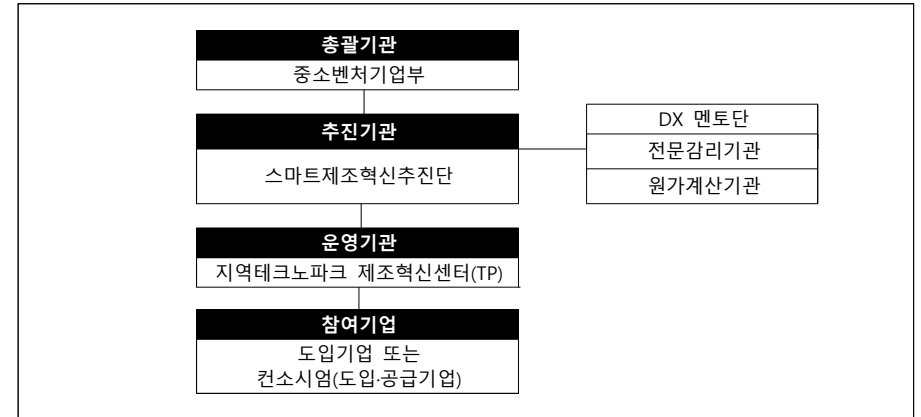
○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
○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(제2023-80호, '23.8.7)

○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

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담당 기관

구분	주체	역할
총괄기관	중소벤처기업부	-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
추진기관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- 사업 추진계획 수립,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-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
운영기관	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	- 과제 신청 및 접수, 선정평가 운영 - 협약 후 과제 관리 등
참여기업	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	- 스마트공장 구축

6. 문의기관

담당기관		문의사항	전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제조혁신과)	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	044-204-7253, 7262
추진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		044-300-0953, 0957, 0952
		사업관리시스템 문의	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*

※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'사업관리시스템 - 로그인 - 전체메뉴(우상단)
- 마이페이지 - 고객센터 - SR요청' 으로 문의

☞ 관련 웹사이트

- 중소기업진흥기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: <http://smart-factory.kr>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(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) : http://pf.kakao.com/_llfqd

☐ 지역별 문의처(스마트제조혁신센터)

기관명	연락처	주소
서울	02-944-6032, 6036	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
부산	051-974-9155	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
대구	053-602-1812~3, 1864~5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-17
경북	053-819-3055~9, 3046, 8156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
포항	054-223-2242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
광주	062-602-7218, 7211, 7214	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
전남	061-729-2583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
제주	064-720-3039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
경기	031-500-3100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
경기북부*	031-539-5140	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
인천	032-260-0621~4	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
대전	042-930-4351	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
충남	041-589-0715, 0719, 0705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
세종	044-850-3821, 3823, 3826	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정로93
울산	052-219-8646, 8910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
강원	033-248-5682, 5697	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
충북	043-270-2813~4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76
전북	063-219-2272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
경남	1811-8297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

*경기 북부지역 : 파주시, 고양시, 포천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구리시, 동두천시, 연천군, 가평군, 의정부시

붙임

기술성평가 지표

☐ 기술성평가 지표

평가 항목		배점
도입·공급 기업 역량 (20점)	◦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	5
	◦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5
	◦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 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
	◦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5
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(25점)	◦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명확히 제시되었으며, AI 자율형공장으로 해결가능한가?	5
	◦ 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목표수준"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	◦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표수준" 달성에 적합한가?	5
	◦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I목표가 연계되었는가?	5
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(30점)	◦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5
	◦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, 구축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?	5
	◦ AI자율형공장의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, 데이터 수집 및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?	10
	◦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5
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(20점)	◦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?	5
	◦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- 구축내용 - 성과 지표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	10
	◦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?	5
	◦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5
가점(5점)	-	(5)
합 계		100

※ 동점 과제는 '①가점 제외한 총점, ②구축내용 적절성,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,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, ⑤기업역량'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

※ (참고) 가점 항목(4개)

구분	항목	세부 내용	제출 서류
1	수준확인	·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'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	수준 확인서 (발급일로부터 3년이내)
2	스마트 제조 표준	·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,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* 적용 표준 : ① OPC-UA (IEC 62541) ② AAS (IEC 63278)	사업계획서 (2.6 표준연계 작성) *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
3	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	·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%인 기업 (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)	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
4	「글로벌강소기업 1,000+」	· 「글로벌 강소기업 1,000+」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	「글로벌강소기업 1,000+」 프로젝트 지정서

※ 가점 항목당 3점, 최대 5점 가점 부여(최대 2개까지 인정)

□ 현장 확인 항목

확인 항목		확인여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·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	적/부
	·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	적/부
	·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	적/부
가점여부	·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최종 반영	-